

음성출력용바

서울 행정 법 원

결 정

사 건 2017아10715 소송비용액확정

신 청 인 서울특별시
대표자 시장 박원순
소송수행자 김정식

피 신 청 인 1. 강명오
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95 102동 506호 (휘경동,
휘경동롯데아파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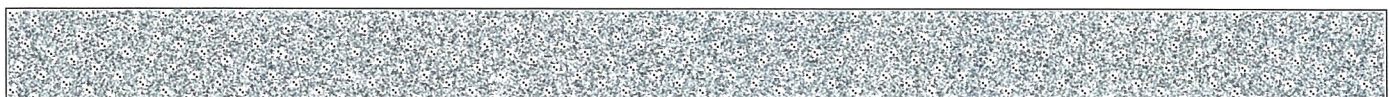
2. 국제콜택시주식회사
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16 (면목동, 국제콜택시)
대표이사 김영모
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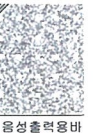
주 문

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구합50627, 서울고등법원 2016누49459, 대법원 2016두 62832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1,503,961원임을 확정한다.

이 유

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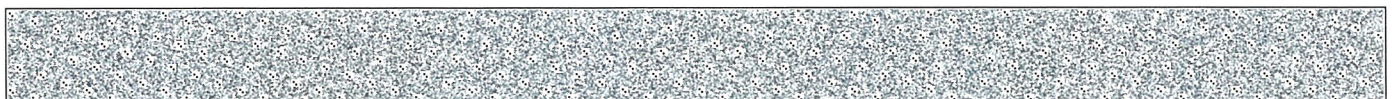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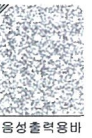
음성출력용바

2017. 11. 22.

사법보좌관

김효태





음성출력용바

소 송 비 용 계 산 서

2017아10715

신청인 : 피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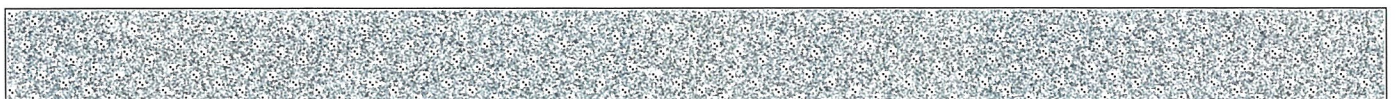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원, 원미만 버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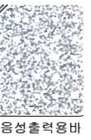
제1심 소가 : 900,741,000원, 제2심 소가 : 900,741,000원, 제3심 소가 : 900,741,000원

심급	비용액	비목	비고
제1심	6,050,000	변호사보수	$9,800,000 + (900,741,000 - 500,000,000) \times 0.005 = 11,803,705$ 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산입
소계	6,050,000		
제2심	8,470,000	변호사보수	$9,800,000 + (900,741,000 - 500,000,000) \times 0.005 = 11,803,705$ 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산입
소계	8,470,000		
제3심	8,470,000	변호사보수	$9,800,000 + (900,741,000 - 500,000,000) \times 0.005 = 11,803,705$ 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산입
소계	8,470,000		
본안비용 소계	22,990,000		1심 6,050,000 + 2심 8,470,000 + 3심 8,470,000
소송비용 확정신청	1,900	인지대	소송비용신청 900 + 확정증명원 500 + 송달증명원 500
	16,023	송달료	실제 지출비용 산입
신청비용 소계	17,923		
합계	23,007,923		본안비용 22,990,000 + 신청비용 17,923

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총액 금 23,007,923원

피신청인들 분담액 : 각 금 11,503,961원 (= 23,007,923×1/2)





응성출력용바

정본입니다.

2017. 11. 28.

서울행정법원

법원주사보 정성재



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서울행정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